

의정부지방법원 2023. 1. 17 선고 2022나211882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의정부지방법원 2023. 1. 17 선고 2022나211882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1. 8. 26 선고 2020가단144987 판결

전 문

원고, 피항소인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마루 담당변호사 김세은

피고, 항소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민 담당변호사 장기철

변론종결 2022. 12. 13.

판결선고 2023. 1. 17.

제1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1. 8. 26. 선고 2020가단144987 판결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 주문 제1항과 제2항은 항소심에서 청구의 감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다.

가. 피고와 C(주민등록번호 1 생략) 사이에 의정부시 D 대 126㎡ 및 그 지상 벽돌조 양기와지붕 단층주택 74.51㎡, 지하실 38.35㎡ 중 2/9 지분에 관하여 2020. 3. 24.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

나. 피고는 C에게 가.항 기재 부동산 중 2/9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청구취지 - 주문 제3항과 같다(원고는 항소심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항소취지 - 제1심 판결 취소. 원고 청구기각.

이 유

1. 인정사실 [근거 - 갑1,2,3, 을1, H기관 및 법원행정처의 각 회신 등]

원고는 2012. 5. 29. C와 대출약정을 체결하였고, 2020. 12. 1. 기준 대출원리금 채권액은 16,562,849원이다. C는 아버지 G의 사망으로 주문 제3항 기재 부동산 중 2/9 지분을 상속받았는데, 2020. 3. 24. 채무초과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상속재산분할협의를 거쳐, 2020. 5. 13. 공동상속인이자 어머니인 피고 단독 명의로 주문 제3항 부동산 전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쳤다.

2. 판단

C의 상속재산분할협이는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상회복을 위하여 C가 상속받은 2/9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C의 상속재산분할협이는 상속포기와 같이 보아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주장하나, 그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

결론이 같은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다만 제1심 판결 주문 제1항과 제2항은 항소심에서 원고의 청구 감축에 의하여 이 판결 주문 제3항과 같이 변경되었다.

재판장 판사 박이규, 판사 황현찬, 판사 오성우